

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’ 관련 재산세 감면 지원 동의안

의안 번호	72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4. 13.

제출자 : 남양주시장

1. 제안이유

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’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·소상공인을 위해 2022년도 재산세 감면안을 마련하여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

2. 근거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거 천재지변·재해 등 지방세 감면 필요성 인정 시,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

3. 감면안(2022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한시적 감면)

- 착한 임대인 지원

- 1) 감면대상: 임차인에게 상가·건물의 임대료를 기간 내 인하한 임대인
가) 임대인)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
나) 임차인) 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 또는 비영리단체
- 2) 대상기간: 2022. 1. 1. ~ 2022. 10. 31.
- 3) 감면세목: 건축물분 재산세
- 4) 감면내용: 임대료 인하액의 100%까지 인정
- 5) 감면제외: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인 경우
※ 특수관계: 직계존비속,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- 6) 감면방법: 직권 또는 신청(기간 내 미신청시 감면 제외)